

## 제 2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 조 및 정관 제 21 조에 의거하여 제 28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 년 03 월 26 일(수요일) 오전 11 시 00 분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 2 로 587-40, 에코누리 에코홀 6 층 대강당

### 3. 회의 목적 사항

####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나. 결의사항

- 제 1 호 의안 : 제 28 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 주당 150 원)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 호 : 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
  - 제 2-2 호 : 사업목적 추가의 건
  - 제 2-3 호 : 이사 선임 및 보수관련 변경의 건
  - 제 2-4 호 : 기타 변경의 건
-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 인)
  - 제 3-1 호 : 사내이사 송호준 선임의 건
  - 제 3-2 호 : 사내이사 최상운 선임의 건
  - 제 3-3 호 : 사내이사 변정희 선임의 건
-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분리선출, 2 인)
  - 제 4-1 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하종화 선임의 건
  - 제 4-2 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노상섭 선임의 건
- 제 5 호 의안 : 등기이사보수규정 제정의 건
- 제 6 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대리행사 : 위임장 원본(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7.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투표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일 이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03월 16일 09:00 ~ 2026년 03월 25일 17:00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3)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8. 기타

당사는 상법 제 542 조의 4 및 정관 제 23 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4일

**주식회사 에코프로**

**대표이사 송호준 (직인생략)**

[별 첨]

□ 제 1 호 의안 : 제 28 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 주당 150 원)

배당구분	배당종류	1주당 배당 금액/주식수	배당 기준일
결산배당	현금배당	150원	2026.03.31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 호 : 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 34 조 (이사의 선임) (신설)	제 34 조 (이사의 선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7 제2항의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u>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u>	개정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 반영

- 제 2-2 호 : 사업목적 추가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신설) <u>28. 위 각호에 대한 부대사업 일체</u>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u>28. 엔지니어링 용역 및 건설업(토목/건축/전기공사 관련 설계, 시공, 감리)</u> <u>29. 에너지 관리, 진단, 개선 관련 용역업</u> <u>30. 수출입대행업, 무역대리업을 포함한 수출입사업</u> <u>31. 신재생 에너지 사업(태양광 발전/에너지저장장치/전력공급/충전시설 제조, 조립, 설치) 및 판매업</u> <u>32. 경영 및 기술 컨설팅업</u> <u>33. 시설(공장, 창고, 발전소, IT 인프라 등)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업</u> <u>34.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u>	중장기 사업 전략 관련 사업목적 추가

- 제 2-3 호 : 이사 선임 및 보수관련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 33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u>3 명 이상</u> 으로 하되, 그 중 <u>사외이사는 3 명 이상</u>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33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u>3 명 이상 7명 이내</u> 로 하되, 그 중 <u>독립이사</u> 는 3 명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반영 및

현 행	변 경 안	비 고
<b>제 35 조 (이사의 임기)</b> ④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b>제 35 조 (이사의 임기)</b> (삭제)	이사 임기 동시 만료에 따른 연속성 훼손 방지
<b>제 38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b>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b>제 38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b>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등기이사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등기이사 보수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 제 2-4 호 : 기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b>제 24 조 (소집지)</b>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b>제 24 조 (소집지)</b>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14 제2항의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반영
<b>제 3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b>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위임장)</u> 을 제출하여야 한다.	<b>제 3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b>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u> 를 제출하여야 한다.	
<b>제 37 조 (이사의 의무)</b>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u>회사</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b>제 37 조 (이사의 의무)</b>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와 주주</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u>회사와 주주</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u>총주주의 이익을 보호</u> 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u>공평하게 대우</u> 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반영

현 행	변 경 안	비 고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b>제 38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b>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 38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b>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반영</p>
<p><b>제 39 조의 2 (위원회)</b>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중략)  다.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p>	<p><b>제 39 조의 2 (위원회)</b>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중략)  다.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p>	
<p><b>제 39 조의 3 (감사위원회)</b>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u>사외이사</u>로 한다.  (신설)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b>제 39 조의 3 (감사위원회)</b>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u>독립이사</u>로 한다.  ④ <u>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  ⑤ <u>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개정 상법 제 542 조의 8 (독립이사의 선임) 및 제 542 조의 12 (감사위원회 구성 등) 반영</p>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신설)	<p><b>부칙(2026.3.26.)</b></p> <p><u>제 1 조(시행일)</u>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u>제 2 조(소집지와 개최방식에 관한 경과조치)</u> 제 24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u>제 3 조(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u> 제 30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u>제 4 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u> 제 33 조, 제 38 조의 2, 제 39 조의 2, 제 39 조의 3(제 4 항 및 제 5 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u>제 5 조(집중투표제에 관한 경과조치)</u> 제 34 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u>제 6 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u> 제 39 조의 3 제 5 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개정 상법 시행일 적용

□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 인)

- 제 3-1 호 : 사내이사 송호준 선임의 건
- 제 3-2 호 : 사내이사 최상운 선임의 건
- 제 3-3 호 : 사내이사 변정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신규선임여부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 여부	직책구분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호준	1965.03.08	재선임	사내이사	3 년	없음	이사회
최상운	1961.05.01	재선임	사내이사	3 년	없음	이사회
변정희	1986.10.20	신규선임	사내이사 (직원이사)	1 년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호준	(주)에코프로 사장	1998 ~ 2000 2000 ~ 2011 2011 ~ 2022 2022 ~ 현재	- PwC 컨설팅 F&PM Manager - 액센추어 파트너 - 삼성 SDI 기획팀장(부사장) - (주)에코프로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상운	(주)에코프로 부사장	2001 ~ 2022 1979 ~ 2016 2016 ~ 2021 2021 ~ 현재	-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 국민은행 - (주)에코프로 전무 - (주)에코프로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변정희	(주)에코프로 수석	2005 ~ 2009 2009 ~ 2019 2019 ~ 2025 2026 ~ 현재	- 청주대학교 회계학 학사 - 보그워너충주(주) 재무팀 과장 - (주)에코프로 재경실 수석 - (주)에코프로 경영관리실 수석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송호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상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변정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분리선출, 2인)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신규선임여부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 여부	직책구분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하종화	1955.10.17	재선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2년	없음	이사회
노상섭	1968.02.15	재선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3년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하종화	세무법인 두리 회장	1989 ~ 1992 2009 ~ 2010 2011 ~ 2011 2011 ~ 2012 2013 ~ 2014 2014 ~ 현재	- 건국대학교 세무행정학과 석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 국 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 국 국장 -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 사단법인 세우회 이사장 - 세무법인 두리 회장	해당사항 없음
노상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1986 ~ 1990 1991 ~ 1993 1993 ~ 1997 1997 ~ 2014 2000 ~ 2003 2014 ~ 2016 2016 ~ 현재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졸업 - 통계청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 위스콘신주립대 MBA 마케팅 석사 - 중앙대 법대 박사과정 법학 수료 -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 컨설팅 고문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하종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노상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 5 호 의안 : 등기이사보수규정 신설의 건

당사는 공정한 임원 보상정책(보수 산정기준, 절차 등) 수립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기반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등기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p><b>&lt;등기이사보수규정(안)&gt;</b></p> <p><b>1. 목적</b>                  등기이사보수규정(이하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의 한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등기이사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기이사 보수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2. 적용범위</b>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법령,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규정 및 임원위임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p> <p><b>3. 용어의 정의</b></p>
--

### 3.1 등기이사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이사를 말하며, 사내이사, 독립이사(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다.

### 3.2 보수

등기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기본급,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책임 및 권한

### 4.1 주관부서장

주관부서장은 HR실장으로 하며, 본 규정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도하고 본 규정의 제·개정을 준비·검토할 책임이 있다.

### 4.2 연관부서장

연관부서장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본 규정 사항에 의한 이사회 의결 등을 준비·수행할 책임이 있다.

## 5. Rule

### 5.1 보수액의 확정

개별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회사의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 등기이사의 업무 실적과 능력 및 담당 업무의 중요도, 동종/동급 기업의 등기이사 보수 수준,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5.1.1 사내이사의 보수액

사내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임원위임계약서상의 보수액 및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5.1.2 독립이사의 보수액

독립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5.1.3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액

기타비상무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임원위임계약서상의 보수액 및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5.1.4 등기이사 보수 총액의 한도

모든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를 합산한 총 한도(이하 "보수 한도")는 50억원으로 하며, 모든 사내이사과 독립이사의 연간 보수액을 합산한 총액은 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5.2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시기

5.2.1 보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에 등기이사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2 등기이사가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2.3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6. 기타**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 결의로 한다. 단, 보수 한도의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1 본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등기이사의 보수는 본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2.2 본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는 새로운 보수 한도를 정하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제 6 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b>3. 용어의 정의</b></p> <p><b>3.1 임원</b> 본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인사발령에 의한 상무 이상 임원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p> <p><b>3.2 주관부서</b> 회사 내 기획업무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p> <p><b>3.3 연관부서</b> 회사내 임원 퇴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p>	<p><b>3. 용어의 정의</b></p> <p><b>3.1 임원</b> 본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회사와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EP, 명인), 상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의 직위를 부여 받아 회사에 상근하며 회사가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집행 책임자를 말한다.</p> <p><b>3.2 주관부서</b> 본 규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의 확정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내 HR 업무부서를 말한다.</p> <p><b>3.3 연관부서</b> 회사내 임원퇴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회사내 제도 개편으로 - '전문가(EP, 명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용대상 추가</p> <p>- 2026년부터 전무 직위는 부서장으로 통합</p> <p>담당부서 변경</p> <p>'관계사'를 '계열회사'로 문구 수정</p>																
<p><b>5. Rule</b></p> <p><b>5.1 퇴직금 산정</b></p> <p>5.1.1. 회사 및 그룹내 관계사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p> <p>5.1.2.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직급</td> <td>상무</td> <td>전무, 부사장</td> <td>사장, 부회장, 회장</td> </tr> <tr> <td>지급률</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직급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5	<p><b>5. Rule</b></p> <p><b>5.1 퇴직금 산정</b></p> <p>5.1.1. -----에코프로그룹(이하 "그룹")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이하 "합산 재임기간")이 -----.</p> <p>5.1.2. -----.</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직급</td> <td>전문가(EP, 명인), 상무</td> <td>부사장</td> <td>사장, 부회장, 회장</td> </tr> <tr> <td>지급률</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직급	전문가(EP, 명인), 상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5	
직급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5															
직급	전문가(EP, 명인), 상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5															

